

제311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9월26일(수)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계속)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3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8.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39.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51. 건강문화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2.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계속) 5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한성·강은희·박인숙·김태원·김장실·이윤석·유승민·송영근·류지영·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19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상희·박범계·부좌현·신기남·우원식·윤관석·은수미·장하나·전순옥·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20
 - o 축조심사 생략의 건 20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1
4.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장하나·강기정·강동원·김광진·김상희·김영주·김재윤·김제남·김현미·남인순·노회찬·박수현·박원석·박홍근·심상정·안민석·우원식·유은혜·은수미·이미경·정진후·진선미·진성준·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21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성찬·김정록·강창일·민홍철·이한성·안홍준·이만우·강은희·주영순 의원 발의) 21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장하나·신경민·김용익·홍영표·박원석·최동익·최민희·김경협·한정애 의원 발의) 21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희수·이만우·박창식·송영근·김을동·강은희·김세연·정갑윤·신성범·여상규 의원 발의) 21
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나성린·손인춘·은수미·이만우·홍지만·강기윤·송영근·최봉홍·주영순 의원 발의) 21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장하나·신경민·김용익·홍영표·박원석·최동익·최민희·김경협·한정애 의원 발의) 21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동철·김

- 재운·김춘진·김현미·문병호·박민수·박원석·박인숙·박홍근·배기운·백재현·우원식·원혜영·유대운·윤관석·은수미·인재근·전정희·정성호·정진후·최동익·최민희·홍종학·홍영표 의원 발의) 21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주영순·이완영·이현재·한기호·김성찬·윤명희·정성호·이만우·김을동·김세연·정희수 의원 발의) 21
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봉홍·김성주·신경민·한정애·장하나·홍종학·홍영표·김용익·김성곤 의원 발의) 21
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동철·이상민·유대운·오제세·홍종학·유성엽·최규성·우윤근·김재운 의원 발의) 21
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윤명희·서용교·홍지만·최봉홍·이종훈·김성태·김영우·김을동·이재영 의원 발의) 21
1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1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희수·이만우·박창식·송영근·김을동·강은희·김세연·정갑윤·신성범·여상규 의원 발의) 21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목희·이찬열·은수미·이미경·한정애·장하나·진성준·강동원·정청래·이윤석 의원 발의) 21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1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2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창일·우윤근·배재정·유기홍·도종환·윤후덕·양승조·박남춘·한명숙·최민희·강동원·신경민·김관영·장하나·김광진·최규성·홍영표·박영선·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27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신동우·남경필·이한성·이우현·김성찬·민현주·김윤덕·김태원·강창일·이노근 의원 발의)(계속) 27
2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김성태·김광림·조해진·안중범·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이완영·서용교·류성걸·김현숙·박근혜·안효대·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27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찬열·배기운·오제세·이낙연·우윤근·민홍철·최민희·정성호·김광진·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27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이낙연·김현·김성주·주승용·박완주·김춘진·강기정·안홍준·신경민·이학영·은수미·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27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민병두·최민희·민홍철·최재천·김춘진·정성호·오제세·주승용·전정희·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27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영주·노영민·윤관석·윤후덕·은수미·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윤석·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27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이한성·최봉홍·이종훈·김정록·안홍준·이만우·전하진·이현재·주영순·남경필·이에리사·권은희·김장실·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27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27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8
3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명연·김성태·김한표·박대동·

박성효 · 서용교 · 조원진 · 주영순 · 홍문표 의원 발의) 29

3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이한성 · 김성찬 · 김정록 · 남경필 · 최동익 · 문정림 · 신경림 · 이재영 · 홍일표 · 박창식 · 유재중 의원 발의) 29

3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 · 이재영 · 문대성 · 이만우 · 함진규 · 이명수 · 김을동 · 정의화 · 김한표 · 강은희 의원 발의) 29

3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발의)(은수미 의원 외 127인 발의) 29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김명연 · 김성태 · 김한표 · 박대동 · 박성효 · 서용교 · 조원진 · 주영순 · 홍문표 의원 발의) 29

38.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강동원 · 김기준 · 김미희 · 김선동 · 김제남 · 김현미 · 노회찬 · 박원석 · 오병윤 · 이상규 · 정진후 · 진선미 의원 발의) 29

39.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이석현 · 진성준 · 우윤근 · 김기식 · 박남춘 · 이춘석 · 김현미 · 박홍근 · 윤관석 · 홍종학 의원 발의) 29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김관영 · 김기준 · 노영민 · 박기춘 · 배재정 · 서용교 · 심상정 · 유승희 · 이미경 · 장하나 · 전정희 · 정진후 · 진선미 · 홍영표 · 홍종학 의원 발의) 30

4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김기준 · 김재운 · 박남춘 · 배재정 · 송호창 · 심상정 · 은수미 · 인재근 · 장하나 · 최동익 · 최민희 · 한명숙 · 홍영표 의원 발의) 30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발의)(김경협 의원 외 127인 발의) 30

44.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 · 김성태 · 김광림 · 조해진 · 안종범 · 김동완 · 김정록 · 강은희 · 신의진 · 이만우 · 김장실 · 손인춘 · 민현주 · 최봉홍 · 진영 · 이종훈 · 민병주 · 윤명희 · 이자스민 · 김상민 · 이완영 · 서용교 · 류성걸 · 김현숙 · 박근혜 · 안효대 · 박성호 · 류지영 의원 발의) 30

4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진성준 · 오제세 · 김성곤 · 신장용 · 배재정 · 이종걸 · 이상직 · 인재근 · 장병완 · 신경민 의원 발의) 30

4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발의)(은수미 의원 외 127인 발의) 30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이찬열 · 이용섭 · 김현미 · 박남춘 · 박수현 · 장병완 · 변재일 · 신장용 · 강기정 · 최재성 · 전해철 의원 발의) 30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발의)(장하나 의원 외 127인 발의) 30

4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 · 박남춘 · 이상민 · 최민희 · 윤호중 · 장하나 · 김성주 · 강기정 · 우원식 · 도중환 의원 발의) 30

50.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윤상현 · 김성찬 · 김을동 · 박대출 · 이완영 · 남경필 · 권성동 · 서용교 · 이채익 의원 발의) 30

51. 건강문화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0

52.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0

5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0

5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0

(10시29분 개의) 니다.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2일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협의가 진행 중이던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9월 17일과 18일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환경부 소관과 고용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 소관 안전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당 소관 법률안 등 안전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계속)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2일 날 제1차 회의에서 201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만을 채택했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대신 오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반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현황은 지금까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입니다. 아직 합의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계속 협의토록 하고, 우선 오늘 합의된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합의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해당 수감 일자와 수감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간사 협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간사협의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번에 쌍용차와 폭력용역에 관한 청문회를 했고 그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건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하나가 MBC에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MBC 관련한 청문회를 우리 야당에서 지난 8월 초부터, 지금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두 달 동안 회의가 있을 때마다 요청을 했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더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MBC 노조 탄압 관련한 청문회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MBC는 지난번 파업으로 인해서,

파업 이후에 또 조합원들이 48명이나 보복인사를 당하고 노골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보도국 정치부에 조합원이 23명인데 13명을 파업 불참자와 시용기자로 채우고 데스크와 1진 반장을 파업 불참자로 채워 가지고 편파방송을 하는 등 지금 MBC 사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MBC의 김재철 사장과 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MBC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 국민이 보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새누리당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저희가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도 이 청문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 논의를 하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 20일 날 쌍용차 청문회 전체회의에서도 저희는 사실 그날 중에 적어도 'MBC 청문회에 관한 최종적인 답변을 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답변을 주지 않으셨고, 우리 신계륜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26일까지는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오늘 아침까지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 오늘이 아니고 일단 MBC 파업 청문회는 우리가 의제로 해서 여기서 결론을 좀 내고 다른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홍영표 간사님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제시한 증인 채택부터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쌍용차·용역폭력 국정조사 그리고 MBC 문제, 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MBC 문제야말로 여야 개원 협상입니다. 이것은 문방위에서 다루기로 했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타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을 우리 쪽에서 다루는 것도 불문율로 봐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MBC는 문방위에서 여야 간 협상

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또 한편 필요하다면 우리가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다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쌍용차, 용역폭력도 해 보셨지만 어떤 해결 방안을 우리 환노위에서 제시할 수 있을까, 정말 몹시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도 봤지만, 작년에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마는 정말 우리가 제시한 안도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다시 국정감사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정조사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위원장님 제안대로 우선 처리할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 짧게,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지금 MBC 청문회는 아마 개원 협상 과정에 일정 정도 합의에 달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방위에서 다루려고 했을 때에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께서 ‘이것은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문방위에서 다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MBC 파업은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환노위에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일까지, 오늘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던 사안이고 아직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MBC 내부에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부패한 경영부터 시작해서 지금 파업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보복 조치, 인사 보복, 징계, 진출 그리고 지금 MBC 시청률은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노사관계에서 출발해서 공영방송이 통째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은 이것 결정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MBC 상황 보십시오.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합시다.

○**위원장 신계륜** 서용교 위원님!

○**서용교 위원** 새누리당의 서용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8월 달 원 구성 협상 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한구 대표께서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환노위에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노사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김성태 위원** 김경협 위원, 발언권 얻어 가지고……

○**서용교 위원** 정확한 문구를 말씀드리면, ‘8월 초 구성될 새 방문진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 판단 및 범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 처리하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방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저희 원내대표께서 환노위에서 다뤄야 된다고 했는지 한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MBC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파업을 극복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 국회의 오래된 관례라는 것은 타 상임위의 소관 사항을 굳이 왜 환노위로 끌어들이고 문제를 자꾸 삼고, 저희 환노위의 정상적인 진행에 애로가 있게끔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위원** 잠깐 답변……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원내대표가 MBC 문제는 노사관계, 노사문제라고 발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노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김경협 위원님도 그렇게 추정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넘어가시고요.

은수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우선 새누리당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거나 사실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좀……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이런 논박보다는 의사진행 쪽에만 발언을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의사진행에 맞춰서 발언……

○**은수미 위원** 우선 MBC가 현재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은 전혀, 그러니까 정상화 과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시사매거진 2580’에서 취재가 왔던군요. 그런데 취재 피디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어떤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취재 오기 직전에, 물론 저한테 취재 오기 때문은 아닙니다. 직전에 MBC아카데미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그 유능한 기자들이 지금 샌드위치 만들고 채소 씻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전보나 발령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원래 프로그램 자체를 기획했던 사람이 빠지고 진행이 안 될 정도이며 그러한 상황이 지금 MBC 전체가 그렇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MBC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완영 위원께서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태 위원** 그 이야기는 본인이 수정하세요. 개인 의견이지……

○**은수미 위원** 뭐, 개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조사 저는 할 수……

○**김성태 위원** 아니, 지금 청문회 주장하는 거 싫어요. 청문회 이야기하세요, 청문회.

○**은수미 위원**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청문회도 같이 하자라는 것이 저의 변경 제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MBC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청문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타 소관 상임위 얘기가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이와 같은 문제는 환노위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고, 지금까지 그래도 문방위에서 다뤄 주실 줄 알고 저희들이 안 다뤄 왔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방위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타 소관 부서 얘기도 아니고 우리 환노위

에서 지금 다뤄도 늦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심상정 위원** 저도 발언 기회 주세요.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환경부 법안 처리와 국감 중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정상적으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오늘 새벽부터도 여야 간사 간에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열리자마자 존경하는 홍영표 민주당 간사님부터 포문을 열고 시작하니 오늘 실질적인 상정 안건 의제하고 전혀 다른 MBC 청문회 건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당 간사인 저로서도 지난 8월 초부터 끈질기게 민주당 홍영표 간사님으로부터 또 위원장님으로부터 MBC 청문회 개최 건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이나 이완영 위원님이 조금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밝혔듯이 문방위 합의사항으로 이게 19대 여야 간 개원 협상의 잔유물입니다.

오늘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 당론이, 문방위에서 MBC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양당이 노력하는 이 19대 개원 협상 합의문이 그럼 민주당 당론으로 수정된 겁니까, 환노위 청문회 문제로?

○**홍영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성태 위원** 그것만 먼저 답해 주세요.

○**홍영표 위원** 합의문하고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 MBC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정 방송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사 간에 그런 분쟁이 발생했고 그래서 장기간 파업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회사가 노조를 거의 없애려고 하는 정도의 이런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대해서 환노위가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영표 위원** 아니, 관계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홍영표 위원** 그것은 원내대표 간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가 당연히 권한을 가지고 노사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요.

○**김성태 위원** 우리 환노위 위원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기회를 주세요.

○**김성태 위원** 제가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심상정 위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고루 주세요.

○**김성태 위원** MBC 노조원에 부당한 징계와 불이익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것은 노사관계로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당 간에 개원 협상에서 문방위에서 청문회를, MBC 노사 이 전체 문제를 청문회로 다루기로 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우리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김성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이 문제만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두 가지, 아까 홍영표 위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해결 방법도 없는데 또 무슨 국정조사나 소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그러면 뭐하러 청문회 합니까?

그리고 쌍용자동차 문제는 이미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지만 쌍용자동차 사태의 핵심은 정치의 실패,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마힌드라나 쌍용차 사 측에서 전향적으로 노력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부족하면 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국회 환노위원회가 방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일관되게 반대해 오셨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 충분히 국민적으로 공유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노위원장께서 이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

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MBC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론에 따르는 환노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각 당의 원내대표께서 하실 일이고요. 환노위의 양당 간사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이런 현안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방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합의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장기간 파업을 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기도 죄송할 정도로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우리는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MBC 파업 중단 이후에 정말 공영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요. 지금 취재기자 50명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지요, 오리걸음 시키지요, 그다음에 무슨 샌드위치 교육 시키지요. 이런 사태를……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도록 하시지요.

○**심상정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심상정 위원**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화관광위와 별도로 다뤄야 될 노동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완영 위원께서 ‘국정감사에서 다루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정감사 중인 채택을 먼저 하고, 청문회 문제 토론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김성태 위원** 신상발언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님 발언 중에 이완영 위원 발언을 ‘무책임하고’…… 상당히 비하하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의원 개개인의 발언과 의사는 존중해 주십시오. 본인의 입장만 발언하시면 되는 거지……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실관계를 몇 개 확인할 게 좀……

○**김성태 위원** 왜 상대 당 의원 신상에 관한 발

언까지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저 개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김성태 위원님,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한정애 위원 발언을 안 한 사람 위주로 발언을 줌……

○심상정 위원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성태 위원 아니, 무책임한 뭐라고……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조금 자제하시고요……

○이완영 위원 아니요, 자제가 아니고, 저를 무책임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위원장 신계륜 아니, 김성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이완영 위원 아니, 본인이, 당사자가 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또 계속 하셔야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아니, 저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먼저 발언을 하고 그러면……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제가 몹시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제가 정말 오늘만큼은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난번 회의 때도 ‘환노위 자격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야당 의원이면 함부로 동료 국회의원을 그렇게 막말 해도 되는 겁니까? 사과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저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위원님 발언하시고……

○심상정 위원 아니, 잠깐만 요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신계륜 아니, 조금 이따 드릴게요.

○김성태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발언을 하고 오늘 또……

○이완영 위원 내가 한 번은 참았어요.

○한정애 위원 잠깐 몇 가지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정말 아무리 여소야대가 됐다 하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 거야. 상임위 전체를 말아야……

○한정애 위원 MBC 청문회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0날 있었던 쌍용차 청문회 시작 전에

전체 다 있을 때 MBC 청문회와 관련해서 일단 야당 쪽에서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가능하면 26일 오늘 전체회의를 할 때 여당 쪽에서 그 답을 좀 달라고 저희가 이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삼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진행돼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개원 협상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의 당론이 수정된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개원 협상 때 합의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MBC와 관련한 것은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방위 차원에서. 노력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김성태 위원 그럼 문방위에서 따져야지,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한정애 위원 또 하나는 이한구 대표께서 6월 5일 날 ‘MBC, KBS 등 언론사 파업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분쟁’이라고 규정을 하셨고, 그 이후에 6월 27일 날 다시 한 번 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MBC 문제는 노사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방위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환노위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개원 협상 때 ‘합의된’ 내용입니다, ‘노력하는’ 조항이 아니라. 민간인 불법 사찰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도 합의가 되었지만 실제 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원 협상 핑계를 대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도 MBC 문제가 노사 문제라고 이미 규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게 뭐니까? 그런 걸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청문회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고 다음에 회의를 계속 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꼭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예, 한 말씀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심상정 위원** 여야 위원들이 서로 견해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인격의 문제로 받아들이신 것은 대단히 말꼬리 잡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지난번에 우리가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한 것은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그만큼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이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쌍용자동차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건강부회해서 마치 제가 이완영 위원님을 모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을……

○**이완영 위원** 잘못 말씀했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네요, 지금. 우리보고 말꼬리를 잡는다는 식으로 표현합니까?

○**심상정 위원** 물론이지요. 저는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 내가 그러면 ‘심 위원이 이러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아니, 사과 안 하시면 사과 안 하는 대로 앞으로 우리 당 차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냐고……

○**심상정 위원** 김성태 위원님, 아무리 정치 공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심상정 위원**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못 할 얘기예요?

○**이완영 위원** 왜 타인을 비방합니까?

○**김성태 위원** 왜 의원 개개인을……

○**김경협 위원** 싸우지 마시고, 발언 기회를 얻어서……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발언을 중단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지금 사안이 복잡하다고 해서 그렇게 개인 몰아세우는 식으로 정치 공세하지 마세요.

○**위원장 신계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왜 개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고요, 자기 얘기만 하지.

○**심상정 위원** 아니, 무책임하다는 말이 못 할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서?

○**이완영 위원** 못 할 말이지요!

○**위원장 신계륜** 발언을 중단하세요! 발언 중단하세요!

○**심상정 위원**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게 그렇게 못 할 말입니까?

○**위원장 신계륜** 이 문제 떠나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MBC 파업 문제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양당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계속했지만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MBC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방침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라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환노위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야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야 간사 합의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두 달 동안이나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력하게 ‘MBC 청문회는 오늘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상임위원장님께서, 존경

하는 신계륜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재안을 내셨습니다.

중재안을 저희들로서는 사실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BC 관련한 증인만 해도 한 1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MBC 이 문제에 관련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핵심적인 김재철 사장의 문제인 우치다 시계루, 이런 증인들도 불러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더 이상 그렇게 진전하기,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계륜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김재철 사장과 노동조합위원장을 불러서 노사 문제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는 이런 중재안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문회에 대해서 저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저는, 이게 미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MBC 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국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MBC 청문회를 다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마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하실 말씀도 많고 또 머릿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 파업 문제는 지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양당 입장도 있습니다. 저도 소속이 민주당입니다만 꼭 그렇게 회의를 운영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이 중재안……

○김성태 위원 중재안은 저도……

○위원장 신계륜 예.

○김성태 위원 양당 간사 입장을 한쪽만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말씀 안 하실 줄 알고 지금 이렇게……

○김성태 위원 저도 18대에 국토위 또 문방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상임위든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일방적인 법안, 안건, 의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불문이 국회법보다 앞서게 간사 간의 합의라고 그럴 정도로 이 간사 간의 협상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도 특히 여소야대가 되어 있는 이 환노위 입장을 참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특히 신계륜 위원장님이 균형감을 가지시고 여야 입장을 고루 이해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상임위를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마음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새누리당 간사인 저로서도 때로는 상당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MBC 지금 청문회 요청 건도, 홍영표 민주당 간사께서 지난 8월 초부터 물론 두 달이 넘게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도 7시부터 지금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협상을 했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야 간입니다. 여야 간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상임위 환경부 법안 상정,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에 관한 간사 간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기도 이전에 MBC 청문회 개최 건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표결로 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 가지고 오늘 상임위에 이렇게 오신다면 앞으로 원만한 상임위 운영이 저는 어렵습니다.

언제 18대 때 환노위가, 그때 당시 10 대 5였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9석에 자유선진당 1석, 10석이었습니다. 민주당 5석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환노위에서 법안이라든지 안건을 처리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유독 왜 MBC 이 청문회 건에 대해서 오늘 강행처리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불태우고, 보시다시피 일곱 명의 위원님이 오늘 한 분도 안 빠지고 이렇게 자리 지키고 계십니다.

○한정애 위원 우리 늘 안 빠집니다.

○김성태 위원 나는 이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어떡하든 오늘 우리 위원장님의 현명한 상임위 운영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원만한 양당 간의 입장을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BC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대로 현 상황에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양당이 서로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

안을 합니다.

10월 8일 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MBC 사장 김재철 사장과 MBC 노조위원장 정영하 노조위원장 두 사람을 증인으로 포함시켜서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서로 생각도 다른 점이 있고 관점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 그렇게 해 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MBC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일정한 방향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다소간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민주당 간사간에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또 제기될 공산이 큼니다. 쌍용차하고 폭력용역 끝나고 나니까 국정조사로 다시 또 지금 현재 불씨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MBC 건도 분명히 지금까지 줄기차게 3개월 가까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에 우리 당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져가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마치고 나서 다시 또 청문회를 이어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홍영표 간사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그런 것을 전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제안도 좋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미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MBC를 추가로 한다면 다시 전반적으로 증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야 간 증인 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 논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증인 협의는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 나갈 거고요, 국감 중에도 필요한 증

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안한 안을 가지고 다시 협상할 시간을 주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니까 두 사람만 포함시키면 현재 노동부가 33명의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첫날 10월 8일 날 증인 김재철과 증인 정영하를 추가해서 35명으로 의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의안에 대해서도 각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신계륜 그 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MBC 문제는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있을 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MBC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분명히 다른 여당 위원들의 의견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걸 사전에 논의를 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증인 처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증인으로 오늘 처리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계속 협의해서 처리해야 일이 진전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10월 8일 날이 아니면, 10월 8일 날 증인 출석하려면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서용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서용교 위원님!

○서용교 위원 원래 MBC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진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의견 청취하고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증인 신청하는 것하고 문방위하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신계륜 문방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그만하시지요, 최봉홍 위원님.

○최봉홍 위원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되어 온 이 명단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만 이 증인에다가 오늘 위원장님께서

MBC 문제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물론 국정 감사로 하자, 특위를 만들자, 청문회를 하자, 그 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노 위원으로서 그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MBC 문제는 방금 서용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 근본 문제가 사장과 회사 간의 정치 문제로 해 가지고 문방위에서 되어 있는…… 근로조건 사항이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회사 측에서 근로조건 사항을 들어 가지고 인사조치도 하고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상화가 되어 가느냐, 안 되어 가느냐 그렇게 분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해서 문방위에서 다루어졌고, 그 사항 자체가 여야 합의가 안 지켜진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노위에 가져와 가지고 다시 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노사 문제가 정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까지 생기는데, 어제 SJM이나 그런 청문회를 보고도 제가 느낀 점이 어제든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SJM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앞으로 분쟁이 생길 요인을 어제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합의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제쳐 두고 청문회가 우선 다급한 문제만 해결했다 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 때는 국회가 일을 해 나가면서 노사 문제를 다룬다면 완전히 불발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이렇게 뻔질식으로 해 가지고 우선 책임은 노조에 미루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볼 때는 MBC 문제는 저는 반대이고, 앞으로 회의 진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국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가지고 노사 간에 화해와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안 사안마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앞으로 전국 현장에 생기는 노사 문제는 국회가 전부 건건이 맡아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노사 자율에 맡겨 놓고 국회로서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안의 내용을 밝히는 사항이나 이 문제에 한해서 좀 회의를 추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MBC 문제는 우리 환노 위원들끼리 새

누리당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최봉홍 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이 정도 선에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중재안을 지금 여기에서 수용하는 측면은 정말 갑작스러운 제안 아닙니까?

○**위원장 신계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제안이란 말이지요. 여야 간에, 간사님들 간에 팽팽한 의견은 있었지만 위원장님이 그 중재안을 내놓으신 것은 갑작스러운 제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을 넣는다면 저는 다른 분들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MBC 두 분만 딱 넣는다는 것은…… 시간을 좀더 주셔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계륜** 지금 민주당에서 전원이 청문회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회를 표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한 겁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 신청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 말씀은 중재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여야가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분만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위원장 신계륜** 아니, 시간이 아니라 오늘 결정 안 하면 이것 못 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두 분만 넣는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지금 최봉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은데, 추가로 좀 넣을 분들이 있다……

○위원장 신계륜 그건 다음에, 이것 정리한 다음에 2차로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좀 양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 제가 제3차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다소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나누어진 자료 보시면 국감 증인, 노동부……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처리를 한다면 저는 이화의료원에 대해서 같이 좀 넣어 주시면……

○위원장 신계륜 어디요? 이화의료원이요?

○이완영 위원 예, 지금 우리 국감 때 용역폭력 때문에 이화의료원이 많이 얘기됐는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빠져 있는지……

○위원장 신계륜 아니, 그건 전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위원장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이것 처리하고 바로 이어서 논의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신계륜 예, 논의할 겁니다. 제가 이것 처리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처리를 안 하면 전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하고……

○홍영표 위원 아니,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 잠깐만요, 처리하고, 증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추가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다음에 처리할 일이 있으면 다음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고용노동부 소관 증인 33명, 참고인 10명, 그다음에 환경부 소관 증인 8명, 참고인 30명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 김재철 사장, 증인 정영하 위원장을 추가해서 노동부는 증인을 35인으로 하고, 장소는 고용노동부 10월 8일 날 국감 때 출석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의결됐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기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 간사님이 그 간에 의결했던 사항, 합의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앞으로 증인들을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양당 간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사실 MBC 청문회 건은 제가 제안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MBC 정상화와 관련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언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안철수 대통령후보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죽 그것을 지켜보고 저에게도 말을 시켜서……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또는 민주통합당에 누가 이익이 되고 누가 불리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BC라는 공공방송 자체가 지금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들이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 문제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사실 어제 저는 이 모임에 가서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겠다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바로 어젯밤에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청문회가 실현되지 않고 국감 증인으로 댔다는 것은 제안한 저로서는 너무나 한계가 크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실마리가 돼서 여야가 공공방송을 하나 바로 세운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은 쌍차나 또는 컨택터스에 대한 청문회도 너무나 한계가 많았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노사관계를 한번 복원시키려는 의도가 우리 여야 위원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서로 나가는 분위기 자체는 노사 합의로 이루어 내고 했기 때문에 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아니지만 국감 때 우리가 MBC의 잘못된 인사와 그리고 해고와 또 방송이 거의 무너진 이 공영방송을 한번 살펴보자 뜻에서 여야 위원들이 함께 그런 자세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우리 상임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홍영표 위원** 증인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다니까……

○**김경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요즘에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합니다. 삼권분립하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문회를 놓고서도 그렇고, 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대단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 필요합니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하에서는 원내대표 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왜 국회의원이 300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증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 국회의 기능상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증인을 한 사람도 선택할 수 없는, 채택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임위, 이런 무기력한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회 쇠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부터 쇠신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쇠신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 앞에 놓인 가장 큰 우리 국회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채택 제대로 할 수 있고, 청문회·국정조사 할 수 있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법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 임무가 이렇게 해서 방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참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소회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에 관계된 발언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태** 어떤 내용입니까?

○**심상정 위원** 국감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심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우선 국감 증인, 여야 간사께서 합의하신 내용 말고 많은 위원님들이 내신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 합의가 안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제출했던 증인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의로원 관련해서는 오늘 새누리당 위원님도 아까 제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추가로 오늘 의결을 했으면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주요한 증인이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다뤄야 될 중요한 의제와 관련된 증인들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지금 가장 큰 사회·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증인들,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미 2004년도에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7년이 지난 뒤에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거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사용자 측에서 대법원의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이유는 법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때 책임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여러 입장까지를 고려해서 노사 간에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2004년도에 노동부가 판정을 했고 7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사법부에서 다뤄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국회가 나서서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정무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책임을 가진 분은 정몽구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환노위에서 이런 의견을 제기해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불법과건 인정과 그에 상응한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 증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삼성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는 적어도 생명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어쨌든 시민단체의 제기에 따르면 56명이 백혈병 또는 유사 증세로 죽었는데, 문제는 죽은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더군다나 이 진실을 규명하는,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법정 소송에까지 삼성이 보조참가인으로 개입을 해서 관련된 많은 유가족이나 또 노동자들에게 아주 고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문제이고요. 또 삼성의 이재용 대표사장을 제가 요청한 것은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사업장, 이것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회가 나서서 감사하고 또 대책을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역시 삼성이 지금 법정 소송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등의 개입을 철회한다면 저는 충분히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재용 대표사장, 삼성전자 대표사장을 요청하는 것은 이 문제 역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분이 나올 때 국회와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가 있는 삼성이 빠져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사망한 사람들이 공장 설비가 개선된 뒤에도 발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장 설비에 대해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삼성이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삼성이 글로벌기업답게 유족들과 투병 중인 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노위에 삼성

이 의견을 전달해 온다면 그 의견을 놓고 또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증인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대표사장을 비롯한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예.

아까 MBC 증인을 채택했는데, 사실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 언론계에서 대표적인 사업장이 YTN입니다. YTN이 지금 총 정계가 5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언론사 노조 탄압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다룬다면 YTN의 사장과 노조 위원장도 불러서 YTN 노조 탄압도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YTN 증인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민주당 통합 은수미입니다.

저도 증인 채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심상정 위원님의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요. 이미 그런 증인들이 다 제출이 되었던 것 같은데 추후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 거기에 더해서 KT 증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미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양심선언도 나왔고, 문건도 나왔고 그다음에 녹취록까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의 경우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그다음에 양심선언을 하신 분 그리고 민동회, 해당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뽑혔던 민동회 회장님 등등을 저희가 이미 증인으로 부탁을 드린 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KT 현대 삼성 YTN 이런 분들, 이런 노사 관계자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장하나 위원입니다.

저도 증인 채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경총 회장, 이회범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유는, 민주당에서 당론발의로 내놓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연매출 1000억 이상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청년고용을 정부공공기관과 같이 의무화할 것이 포함된 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총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고 또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들어 경제주체 간의 형평성 부분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많은 경제위기를 겪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런 청년 고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논쟁을 해 봐야,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여당 대통령후보라든가 당 차원에서도 이견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은 경제주체와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시의성도 있고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지난 청문회 때 너무 명백한 위증을 했던 KEC의 이신희 실장인가요, 그 사람을 위증의 건으로 고발조치까지 속기록에 나오는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KEC 광정수 회장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은 더 책임 있는 답변과 진실에 대해서 더 따져 물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전히 분쟁 중이고, 다행히 창조건설팅의 심종두 노무사가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데요. 이화의료원에 관련된 문제도 지금 정기국회가, 환노위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데도 저렇게 전혀 교섭을 회피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섯분의 국회의원이 직접 이화의료원에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이 면담을 회피하고 사실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위협조적이었으므로 국감 때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TN 건은 다가오는 10월 5일이 벌써 해고가 만 4년째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징계와, 그 후로 정말 어디 가서 노사의 문제를 따져 물을 데도 없는 이런 사면초과에 처한 언론인들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꼭 YTN 경우에도 사 측과 노조 측을 불러서 해묵은 문제

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야대 여소의 환노위의 상황에 대해서 간사님들 간에 합의에 대해서 존중해 줄 것을 말씀하셨고, 제가 국회 경험은 없지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개원협상 안에서 여소야대인 여당이 언론노조에 관한 청문회를 할 것으로 사실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게 문제의 발단이고, 사실 약속한 바대로 진행되었으면 오늘 환노위에서의 이런 분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당내에서 이런 개원 합의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 이런 불필요한 얘기가, 논쟁은 환노위 차원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원 협상은 의원끼리의 약속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태 한명숙 위원님은 아까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한명숙 위원 증인과 관련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한명숙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환경부와 관련해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과 현 공정거래위원장인 김동수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 등등 또 친수구역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는 점에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을 꼭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총 6500억가량의 총인시설을 했는데 이 총인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총인처리시설의 전국적인 담합 정황도 드러나고 또 효과의 문제도 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노동부 쪽과 관련해서는 일단 YTN과 관련해서 두 위원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

도 동의합니다. 6명이 4년째 해고노동자로 있으면서 엄청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의 노종면 참고인과 배석규 증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사장인 김종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도급과 관련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사장을 불러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증인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하나……

○**김경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오늘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신 한정애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특히 저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 몇 차례 부산지방노동청을 할 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공장장—현대차 사장이 되겠지요—을 불러서 불법과건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의지를 촉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무적인 결단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몽구 회장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더 요청을 드리는 것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최수홍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격 검정 업무를 기술자격검정원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수탁의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고 부정 수탁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격검정원의 사무총장 최수홍 씨를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쳤습니까?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이 짧게 말씀하신다니까 마치시고 최봉홍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기본조건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

야 합니다. 지금 MBC 청문회도 이렇게 보류가 된 상태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YTN과 부산일보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가 왜곡되고 언론의 자유가 탄압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언론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징계를 받고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YTN과 부산일보 관련자들을 동시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언론을 바로 세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압박 받고 있는 언론노동자들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의 노동3권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당연히 MBC도 함께 청문회를 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에 의해서 청문회도, 국정조사도 어찌 됐든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라도 반드시 채택을 해서 언론이 바로 서고 언론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봉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먼것번 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문제를……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120명 중에 방금 환노위원장께서 45명을 결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진행은 추가로 증인을 다시 신청하는 회의 진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도 저희들이 볼 때 개인적으로는 이의가 많습니다. 많지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 없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증인 신청을 더 해 가지고 그전에 거론됐던 사항을 다시 재론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마 간사 간에 협의를 더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입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5명 증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업무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제시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환노위와 관계없는 사항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의 이동걸 증인 그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류경희 국장, 김정환 증인 그다음 노동부 사무관, 정보과 직원 이러한 사항들

은 전부 물러난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무원 같은 경우 그 위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배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해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28번 순천향병원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최재준 증인은 어느 분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증인 신청하신 분하고 재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앞으로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위원회에서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안전에 대한 자구정리는……

○심상정 위원 잠깐만요, 언급이 안 되면 양당 간사께서 혹시 누락시킬까 봐……

가습기 관련한 증인은 반드시 채택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은 오늘 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계륜 위원장께서 의결한 안전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짧게……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김상민 위원 증인 관련해서 요청드리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고용노동부 소관에 있어서 제가 증인 신청한 분들은 한 분도 안 돼서 좀 곤란함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 청문회 이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매각에 관련하셨던 이희범 전 산자부장관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쌍용자동차 청문회가 위원님들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자부

의 이희범 전 장관님은 반드시 증인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님의 아들 특혜 취업과 관련해서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을 다 떠나서 국민의 아주 중요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 특혜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 줘야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언론사에서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또 문재인 후보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아서 제가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 원장님 그리고 고용정보원 인사 담당인 최현용 부장님 이렇게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증인 신청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환경부 또 노동부 소관 법안 상정·의결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죽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은 이미 사실상 의결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추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마칩시다.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성원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2건의 안전을 모두 일괄해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한성·강은희·박인숙·김태원·김장실·이윤석·유승민·송영근·류지영·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상희 · 박범계 · 부좌현 · 신기남 · 우원식 · 윤관석 · 은수미 · 장하나 · 전순옥 · 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장이신 김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환경부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소위 심사대상 11건의 안건 중 2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그 밖의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에서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자 책임 원칙에 위배되고 임시집하장이 도심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비산먼지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김성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심도 있게 법률안을 검토

해 주신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35분)

○**위원장대리 홍영표** 상정한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2건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들이고 소위 심사과정에서도 축조심사 형태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 의결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방금 전에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큰 열정과 노고를 기울여 오늘 환경부 소관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

정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37분)

○위원장대리 **홍영표**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5항과 제41항의 경우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의안의 상정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의사일정에 같이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환경부 소관 안전은 총 16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들 안전을 모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장하나 · 강기정 · 강동원 · 김광진 · 김상희 · 김영주 · 김재윤 · 김제남 · 김현미 · 남인순 · 노회찬 · 박수현 · 박원석 · 박홍근 · 심상정 · 안민석 · 우원식 · 유은혜 · 은수미 · 이미경 · 정진후 · 진선미 · 진성준 · 최동익 · 한정애 의원 발의)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김성찬 · 김정록 · 강창일 · 민홍철 · 이한성 · 안홍준 · 이만우 · 강은희 · 주영순 의원 발의)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

원 대표발의)(은수미 · 장하나 · 신경민 · 김용익 · 홍영표 · 박원석 · 최동익 · 최민희 · 김경협 · 한정애 의원 발의)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

원 대표발의)(최봉홍 · 정희수 · 이만우 · 박창

식 · 송영근 · 김을동 · 강은희 · 김세연 · 정갑윤 · 신성범 · 여상규 의원 발의)

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

원 대표발의)(이완영 · 나성린 · 손인춘 · 은수미 · 이만우 · 홍지만 · 강기윤 · 송영근 · 최봉홍 · 주영순 의원 발의)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장하나 · 신경민 · 김용익 · 홍영표 · 박원석 · 최동익 · 최민희 · 김경협 · 한정애 의원 발의)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동철 · 김재윤 · 김춘진 · 김현미 · 문병호 · 박민수 · 박원석 · 박인숙 · 박홍근 · 배기운 · 백재현 · 우원식 · 원혜영 · 유대운 · 윤관석 · 은수미 · 인재근 · 전정희 · 정성호 · 정진후 · 최동익 · 최민희 · 홍종학 · 홍영표 의원 발의)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주영순 · 이완영 · 이현재 · 한기호 · 김성찬 · 윤명희 · 정성호 · 이만우 · 김을동 · 김세연 · 정희수 의원 발의)

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

원 대표발의)(은수미 · 최봉홍 · 김성주 · 신경민 · 한정애 · 장하나 · 홍종학 · 홍영표 · 김용익 · 김성곤 의원 발의)

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

원 대표발의)(김우남 · 김동철 · 이상민 · 유대운 · 오제세 · 홍종학 · 유성엽 · 최규성 · 우윤근 · 김재윤 의원 발의)

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

원 대표발의)(조해진 · 윤명희 · 서용교 · 홍지만 · 최봉홍 · 이종훈 · 김성태 · 김영우 · 김을동 · 이재영 의원 발의)

1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

원 대표발의)(최봉홍 · 정희수 · 이만우 · 박창식 · 송영근 · 김을동 · 강은희 · 김세연 · 정갑윤 · 신성범 · 여상규 의원 발의)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

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목희 · 이찬열 · 은수미 · 이미경 · 한정애 · 장하나 · 진성준 · 강동원 · 정청래 · 이윤석 의원 발의)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 시의 건

(14시41분)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은수미 의원·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혜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최봉홍 의원·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의원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간사 위원님, 그리고 김성태 간사 위원님 이하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한 결의안과 법안을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25일 대표발의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의 핵심구역인 자연보전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1967년 국립공원제도가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핵심구역인 자연보전지구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며 국립공원 이용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발사업으로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홍영표 간사,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국립공원은 현 세대의 지속가능한 이용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잘 보전된 국토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정·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월악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인 IUCN에 의해서 생태계가 우수하고 잘 관리되고 있으며 자연상태 그대로나 그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는 IUCN 카테고리 2등급으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에 건설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보존가치를 고려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립공원 보전가치가 이용가치보다 9배 이상 높다는 것이 200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18개 국립공원의 총 자산가치 분석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케이블카 건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리산, 설악산, 월출산의 경우 보전가치가 이용가치보다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지리산 5조 2535억 원, 보존가치 4조 2201억 원, 이용가치 1조 334억 원 그리고 설악산은 5조 5663억 원인데도, 보존가치는 4조 4000여 억 원이고 이용가치는 1조 1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월출산은 2조 9000억 원인데도, 보존가치가 2조 9000억 원 그런데 이용가치는 576억 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은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에 설치되는 케이블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박탈하는 반면 케이블카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미래세대가 국립공원 내의 야생동식물과 국립공원의 역사를 향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연보전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후변화와 환경위기가 심화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가치보다는 보전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계 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를 살리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놓이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노동위원회의 사례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본 결의안의 취지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지역 전체가 아닌 핵심지역, 그러니까 정상부까지 놓이는 케이블카의 문제점이 지금 좀 많이 호러지고 있고 언론에서는 정상부까지 놓이는 케이블카라는 면이 부각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이런 여론하고 좀 물타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전해야 되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잘 보아주십시오 호소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일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원전 사고·고장으로 인하여 방사능 누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방사능 감시와 관련해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는 아무런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는 환경부처에서 원자력 및 방사능 감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원자력안전 관련 규제청을 환경성 산하에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환경청 대기방사능실에서 환경방사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고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역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성 및 방사능 감시 업무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 수행하고 있어서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성오염 감시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 역시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능비가 내리면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는 환경부와 지자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통행제한의 대상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방사성 물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오래전 원전사고를 경험 하였던 스리마일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방사성오염이 인류 최악의 재앙임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시간이 꽤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사성오염으로 인한 후유증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사성오염에 대한 대비는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성오염은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지구에도 그리고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서면으로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양당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9월 14일 제출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현행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1년 단위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정기평가와 5년 단위로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환경보건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항목 중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유효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에 만료함에 따라 이를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양당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16건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하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자연보전지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기와 선박 등도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9항 은수미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공해자동차 구입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고 배터리 등 장치와 부품의 반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천연가스차량은 연료탱크 반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최봉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연비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나 과징금의 한도에 대하여 부처 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과징금의 적정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구입 시 해당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저탄소협력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처 간에 일부 이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악재생기능이 포함된 이동전화기 휴대용 음향기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하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호소에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통행제한 대상에 방사성물질을 추가하는 것으로, 다만 방사성물질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므로 방사성 동위원소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이며 재정확보와 하위법령 마련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4년 1월 1일부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최봉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 및 지원 또는 인명 피해 보상에 있어서 지원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안은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안은 생태통로의 조사 및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관광 지정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중복성에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해진 의원님 안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당시 2012년 말까지 3년 동안만 유효하게 규정하였는

데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계속해서 건강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홍 의원님 안은 저탄소차 협력금을 도입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심의와 연동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영표 의원님 안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용자업무 위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제19항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 환경부장관을 협의기관이 아닌 공동인증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관광 지정제도와 중복성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의 보전·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민주당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최봉홍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유영숙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의 경우는 과징금 상한액이 과도하다거나 또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서 2015년 이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지경부 입장은 그동안의 합의 사항을 깨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방향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자동차 제작사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에 대해서 환경부가 좀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실가스 과징금의 상한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환경부에서 제안하는 내용과 지경부에서 하는 내용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지경부와 잘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제안한 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기업에서 너무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은 업계와 지경부에서 좀 미뤘으면 하는, 2015년부터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13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그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좀 지원을 해 드릴 것이 있으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사실 중·대형차 비중이 약 82% 정도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차와 소형차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적는데 이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과 보조금 구간의 차이를 좀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동안에 경차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경차를 유도하도록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협력금·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다만 CO₂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기술 개발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소비패턴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또 급격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업계의 주장이 있어서 국내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도의 운영성과를 한 1, 2년 시행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구간과 금액을 조절해서 좀더 합리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은수미 위원님 토론 마치신 겁니까?

○은수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16건의 안전에 대하여……

○은수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도 환경부장관님께, 김우남 의원님께서 생태통로 설치 문제에 관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신 건데요. 지난번에도 이것을 여쭙 봤는데 현재 생태통로 관리주체가 각각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이고, 국도는 국토해양부이고, 지방도는 지자체이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래서 현재 이 주체를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문위원회에서 지적하셨지만 환경부장관이 직접 개선조치 요청을 하고—어떤 것이든지—설치관리자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좀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개정안에는 설치 관리자가 개선조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목적을, 그러니까 생태통로가 제대로 관리가 돼서 우리 동물들이 제대로 잘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환경부에서 개선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이구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는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훼손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야 하도록 하는 의무까지 결합시키는 게, 그런 방식으로 좀더 보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지역 중에서 보전가치 높은 지역을 보호해야 된다고 현재 개정안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발 또 훼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만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그런 환경부의 의견 초지일관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환노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16건의 안전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6건의 안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내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소관 안전 처리에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11건의 안전을 모두 일괄해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창일·우윤근·배재정·유기홍·도종환·윤후덕·양승조·박남춘·한명숙·최민희·강동원·신경민·김관영·장하나·김광진·최규성·홍영표·박영선·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신동우·남경필·이한성·이우현·김성찬·민현주·김윤덕·김태원·강창일·이노근 의원 발의)(계속)
2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김성태·김광림·조혜진·안종범·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이완영·서용교·류성걸·김현숙·박근혜·안효태·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찬열·배기운·오제세·이낙연·우윤근·민홍철·최민희·정성호·김광진·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이낙연·김현·김성주·주승용·박완주·김춘진·강기정·안홍준·신경민·이학영·은수미·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민병두·최민희·민홍철·최재천·김춘진·정성호·오제세·주승용·전정희·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영주·노영민·윤관석·윤후덕·은수미·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윤석·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이한성·최봉홍·이종훈·김정록·안홍준·이만우·전하진·이현재·주영순·남경필·이에리사·권은희·김장실·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15시08분)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김우남 의원·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김우남 의원·홍영표 의원·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9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신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종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이종훈 소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고용노동부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소위 심사대상 50건의 안건 중 9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그 밖의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에서 의결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현행 판례와 행정해석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과금의 개념이 다소 불분명하여 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유족의 학업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재근로자 유족들이 수급권을 조속히 보장받도록 하고 수급자격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부칙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홍영표 의원·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설립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관별 총 구매액의 1%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를 허용하였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2.5%로 적용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3%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동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이종훈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심도 있게 법률안을 검토해 주신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5시15분)

○위원장대리 김성태 상정한 안건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11건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들이고 소위 심사과정에서도 축조심사 형태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0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 의결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김우남 의원·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의사일정 제2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김우남 의원·홍영표 의원·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의사일정 제29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하여 법률안의 사회적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세심하게 지적하고 보완해 주신 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 법률안의 취지가 차질 없이 운용되어서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들 오전부터 상임위 회의가 원만치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명연·김성태·김한표·박대동·박성효·서용교·조원진·주영순·홍문표 의원 발의)

3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김성찬·김정록·남경필·최동익·문정림·신경림·이재영·홍일표·박창식·유재중 의원 발의)

3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이재영·문대성·이만우·함진규·이명수·김을동·정의화·김한표·강은희 의원 발의)

3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발의)(은수미 의원 외 127인 발의)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명연·김성태·김한표·박대동·박성효·서용교·조원진·주영순·홍문표 의원 발의)

38.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현미·노회찬·박원석·오병윤·이상규·정진후·진선미 의원 발의)

39.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이석현·진성준·우윤근·김기식·박남춘·이춘석·김현미·박홍근·윤관석·홍종학 의원 발의)

-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기준·노영민·박기춘·배재정·서영교·심상정·유승희·이미경·장하나·전정희·정진후·진선미·홍영표·홍종학 의원 발의)
- 4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기준·김재운·박남춘·배재정·송호창·심상정·은수미·인재근·장하나·최동익·최민희·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발의)(김경협 의원 외 127인 발의)
- 44.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김성태·김광립·조해진·안종범·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이완영·서용교·류성걸·김현숙·박근혜·안효대·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 4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진성준·오제세·김성곤·신장용·배재정·이종걸·이상직·인재근·장병완·신경민 의원 발의)
- 4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발의)(은수미 의원 외 127인 발의)
-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이용섭·김현미·박남춘·박수현·장병완·변재일·신장용·강기정·최재성·전해철 의원 발의)
-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발의)(장하나 의원 외 127인 발의)
- 4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박남춘·이상민·최민희·윤호중·장하나·김성주·강기정·우원식·도종환 의원 발의)
- 50.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윤상현·김성찬·김을동·박대출·이완영·남경필·권성동·서용교·이채익 의원 발의)
- 51. **건강문화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52.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5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5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시20분)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어서 심사할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은 총 24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들 안건을 모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정부가 제출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안홍준 의원·이재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은수미 의원·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박영선 의원·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백재현 의원 및 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문화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2항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 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3항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4항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경협 의원 제안설명하실 겁니까?

○**김경협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의원님 제안설명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 조금 뒤에 하시고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환경노동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울산 남구을 출신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에서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승진·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괴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학력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력차별이라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및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나 국가자격 등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나 국가자격 등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력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넷째,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섯째,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근본적으로 학력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7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노조법 개정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몇 가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방향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아주 세부적인 조항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헌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행 노조법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개입은 때로는 노사 갈등을 부추겨서 산업현장에서 쟁의의·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자치주의 원칙과 노조자주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현재 경제민주화는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제민주화에 경제계 내부의 주체를 형성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계 내부에서, 경제계 내부의 경영 부패나 독과점 문제를 내부에서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기본으로 해서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내수 동력의 확대를 위해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 시기는 노동기본권을 좀더 확대하고 보장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에 맞게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데 더 이상 회피하거나 이것

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ILO 기준은 적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의해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주 세세한 내용들은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김경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의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94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청년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이 무려 30%를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5월 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8%로 전체실업률 3.2%의 2배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청년고용률 역시 41.1%로 전체고용률 60.1%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부터 현재의 법안명으로 수정 후 시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지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특별법의 시행기간만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3%로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도 적용하려는 게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또한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고용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에게 고용의무부담금이나 기타 규제를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이행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청년고용의 신규창출이 예상이 되는데, 2017년까지 총 3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사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회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청년고용대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제가 오늘 와서 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는 가운데, 그냥 인용을 해서 좀 읽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고용의무화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원칙에의 부정적 효과 그리고 중장년층 등 다른 계층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의무화는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영업의 자유와 상호 배치될 수도 있고,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청년의무고용할당제가 추가고용을 강제하는 경우 치열한 국제적·국내적 경쟁하에 있는 기업이 인건비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고연령층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여 세대간 고용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이 역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검토요약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속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다시없기 때문에 각별히 양해를 해 주시면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나중에 법안소위에 와서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장하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장하나 의원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장하나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단지 일자리만 얻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향후에 예상 노동기간도 길고 납세를 해도 더 할 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

는 것은 단순히 시혜가 아니라 아까와 같은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정말 경제주체가 돼서 가장 원동력이 되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는 시혜 측면이 아니라 이 역시도 국가경제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요새 경제민주화 조항을 여야 막론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 경제주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년세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의 내용처럼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제가 다시 한번 법안심사소위 때 소상히 보고를 올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하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안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 1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제35항 및 제39항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바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현장감 있게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교육·훈련 과정과 교육·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을 통해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불법적인 활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법률안은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고치는 등 법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2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제54항까지 20건의 법률안과 4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요약본으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좀 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준수해야 될 국가의 법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급 휴업·휴직을 할 여력이 있는 사업주도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고용형태별·직급별 고용량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감소방안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취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해외 직장체험 등의 기회 제공 등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취업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해외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높은 실업률하에서 국내 고용확대에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국제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이수과정자격제도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시기 문제, 이수제 도입종목 선정 문제 및 훈련생 평가방식 등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도급사업에서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므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시간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와 시행 시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의 경우 업종별 특례유지 또는 제외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례인정업종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요약을 작성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1항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아동 연령

을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간접차별의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3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관리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으나 산업별·직종별 여성관리자 고용 현황 및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공익위원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별로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의 대상 확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자율화와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단체협약 해지 제한, 직장폐쇄의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산업현장 및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정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도 있게 그리고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용어 정의를 통해 사내하도급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사내하도급에서의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정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개별조항 각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수의계약을 하였을 경우 장단점이 있으므로 경쟁의 제한을 통한 판로 지원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사업주가 위법한 근로자 공급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을 통해 규제하지 못하는 간접고용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간접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법한 근로자 공급을 이유로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의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고, 고용 의제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48항까지 2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보고는 제안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검토보고서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하나 의원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매

년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관련 사실관계 조사 업무 등을 맡기는 최저임금감독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민간 전문가에게 사실관계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조사 업무가 중복되거나 체불 사건 처리 흐름의 일관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한 논의 후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입니다.

채용·승진·임금 등 사회 전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의 하나인 학력에 의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옳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지상주의 풍토가 지나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과도한 임금격차 유발, 과잉교육, 고학력 실업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불합리한 학력차별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력은 상당 부분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경제·사회적으로 학력이 개인의 상대적 능력 지표로 현재 용인되고 있으며,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게 된다면 민간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력 차별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제명을 ‘학력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하고 있으나 법 제명과 전반적인 내용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 제명도 법 내용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4항까지, 4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관련 위원회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하는 것으로

로서 이 내용들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내용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외의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성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54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24건의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24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안건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전에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 일정(안)을 마련해서 지체 없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위원 끝나시기 전에 하나만……

○위원장대리 김성태 무슨 발언입니까?

○홍영표 위원 쌍용차 문제 한 말씀만 하고 회의 마무리 짓지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것 처리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오전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랫동안 상임위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

○**위원장대리 김성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홍영표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회의 끝나기 전에 꼭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한 국정조사 건입니다.

오늘 제가 회의 중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는 이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진실도 많이 밝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해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기획 부도나 회계 조작 이런 문제는 사실 시간의 제한으로 해서 저희가 완전하게 그것을 밝히지 못했고, 또 폭력 진압에 대해서도 그날 조현오 증인이 나와서 직접 발언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날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정리해고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문제는 꼭 노사에만 맡길 문제도 아니고 노사정 전부 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출발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쌍용자동차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여야의 어떤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쌍용자동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정조사안을 꼭 좀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룬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중 훈	장 하 나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청가 위원(1인)**

주 영 순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 기 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천 병 호
전 문 위 원	이 동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유 영 숙
차 관	윤 중 수
물 환경 정책 국 장	이 정 섭
녹 색 환경 정책 관	이 찬 회
환 경 보 건 정책 관	정 회 석
기 후 대 기 정책 관	박 천 규

고용노동부

장 관	이 채 필
기 획 조 정 실 장	전 운 배
고 용 정 책 실 장	한 창 훈
노 동 정 책 실 장	조 재 정
노 동 시 장 정 책 관	이 재 흥
인 력 수 급 정 책 관	이 태 희
직 업 능 력 정 책 관	박 성 희
고 용 평 등 정 책 관	신 기 창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정 지 원
근 로 개 선 정 책 관	박 중 길
산 재 예 방 보 상 정 책 관	문 기 섭
노 사 협 력 정 책 관	권 혁 태

○**출석 위원(14인)**